

## 환경바이오연구센터 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 1조 (목적)** 본 규정은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에 관한 관련지식 및 기술의 연구개발, 산학협력, 인력양성, 장비활용 등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를 실현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**제 2조 (명칭 및 소재)** 본 센터는 호서대학교 환경바이오연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칭하며, 호서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
**제 3조 (사업)** 본 센터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전환경성검토, 환경영향평가, 사후환경영향조사
2. 환경산업 및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한 각종연구
3. 국책사업유치 지원
4. 산·학·연 협동 프로그램의 개발, 운영
5. 세미나, 학술회의 개최 등 각종 연구진흥 사업 수행
6. 기술지도,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원 등 각종 산학협력 사업 수행
7. 국내 외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정보의 수집과 제공
8. 산업체 기술 인력의 수탁교육
9.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수행
10. 기타 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

### 제 2 장 조 직

**제 4조 (조직)** 센터에는 다음 조직을 둘 수 있다.

1. 측정·분석팀
2. 산학연 지원팀
3. 교육 및 기술지원팀
4. 연구용역팀

**제 5조 (임원)** 센터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
1. 센터장 : 1명
2. 부센터장 : 1명
3. 연구원 : 약간명
4. 행정보조원 : 약간명
5. 조교 : 약간명

**제 6조 (임원의 임무, 임명, 임기)**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. 센터참여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부센터장은 센터와 관련된 세부업무 및 연구와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 센터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각 연구원, 행정보조원 및 조교 등은 센터장이 임명한다.

### 제 3 장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

- 제 7 조 (운영위원회)**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수립, 사업방향의 설정, 예·결산 및 사업 계획, 기타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맡고, 부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기타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위원 중 간사를 둔다.
- ④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
- 제 8 조 (자문위원회)** ① 연구소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자문위원은 관련 학문분야의 권위 있는 국내외 인사들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.
-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 4 장 운영 및 재정

- 제 9 조 (재정)** ① 센터의 재정은 각종 지원금, 연구비, 용역비, 사업수익금, 기타 기부금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- 제 10 조 (보고)**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세칙) 시행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.